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6
----------	---

제출년월일 : 2000. 4. 18

제출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의 개정('99. 8. 31)에 따라 감사청구의 유효요건인 감사청구 주민수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區의 사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區 관내 거주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300분의 1이상으로 함(안 제2조)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는 사하구 관내에 거주하는 20세이상 주민총수의 300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